

기능시험 채점기준·합격기준(제66조관련)

1. 제1종 대형면허

가. 채점기준

시 험 항 목	감 점 기 준	감 점 방 법
(1) 굴절코스의 전진·통과	5	○지정시간(2분) 초과 시마다, 검지선 접촉 시마다
(2) 곡선코스의 전진·통과	5	○지정시간(2분) 초과 시마다, 검지선 접촉 시마다
(3) 방향전환코스의 전·후진	5	○확인선 미접촉, 지정시간(2분) 초과 시마다, 검지선 접촉 시마다
(4) 평행주차코스의 주차	10 5	○전·후 확인선 미접촉 또는 전진으로 진입 ○지정시간(2분) 초과 시마다, 검지선 접촉 시마다
(5) 기어변속코스의 전진(자동변속장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)	10	○기어 변속을 하지 아니하고 통과 시 또는 속도 매시 20킬로미터 미만 시
(6) +형 교차로 통과	5 5	○좌·우회전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할 때마다 정지신호시에 정지불이행 시, 교차로 내에서 20초 이상 이유 없이 정차한 때 ○신호 위반 시마다
(7)횡단보도 일시정지	5	○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불이행 시 ○앞범퍼가 정지선으로부터 1미터 이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
(8) 철길건널목 일시정지	5	○철길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 불이행 시 ○앞범퍼가 정지선으로부터 1미터 이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
(9)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	10	○경사로 정지검지구역 내에 정지 후 출발 시 후방으로 50센티미터 이상 밀린 때
(10) 출발 및 출발 시 방향지시등 작동	5	○출발지시가 있는 때부터 2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, 도로 중앙으로 진입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, 진입 후 끄지 아니한 때
(11) 종료 시 방향지시등 작동	5	○종료지점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진입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
(12) 돌발사고 시 급정지 및 출발	10	○돌발등이 켜짐과 동시 2초 이내 정지하지 못하거나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때 또는 출발 시 비상점멸등을 끄지 아니한 때
(13) 전체 지정시간 초과 (지정속도 유지)	1	○전체 지정시간 초과 매 5초마다, 지정속도 매시 20킬로미터 초과 시 (기어변속코스를 제외한다.)
(14) 시동상태 유지	5	○시동을 꺼뜨릴 때마다 ○엔진이 4천RPM 이상으로 회전할 때마다 ○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경우 가속페달 과조작으

(15) 삭제 <2026. 2. 24.>

로 안전제동장치가 작동할 때마다

나. 합격기준

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은 때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.

- (1)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
- (2) 경사로코스·굴절코스·곡선코스·방향전환코스·기어변속코스(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) 및 평행주차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
- (3) 특별한 사유 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한 때
- (4)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
- (5)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진하여 앞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때
- (6) 시험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

2.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

가. 감점기준

1) 기본조작

시험항목	감점기준	감점방법
가) 기어변속	5	· 시험관이 주차 브레이크를 완전히 정지 상태로 조작하고, 응시생에게 시동을 켜도록 지시하였을 때, 응시생이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기어변속(클러치 페달조작을 포함한다)을 하지 못한 경우
나) 전조등 조작	5	·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전조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(하향, 상향 각 1회씩 전조등 조작시험을 실시한다)
다) 방향지시등 조작	5	·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
라) 앞유리창닦이기 (와이퍼) 조작	5	·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앞유리창닦이기(와이퍼)를 조작하지 못한 경우

※ 비고: 기본조작 시험항목은 가) ~ 라) 중 일부만을 무작위로 실시한다.

2) 기본 주행 등

시험항목	감점기준	감점방법
------	------	------

가) 차로 준수	15	· 나) ~ 차)까지 과제수행 중 차의 바퀴 중 어느 하나라도 중앙선, 차선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선을 접촉하거나 벗어난 경우
나) 돌발상황에서 급 정지	10	·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에 2초 이내에 정지하지 못한 경우 ·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않은 경우 · 출발 시 비상점멸등을 끄지 않은 경우
다) 경사로에서의 정 지 및 출발	10	· 경사로 정지검지구역 내에 정지한 후 출발할 때 후방으로 50센티미터 이상 밀린 경우
라) 좌회전 또는 우 회전	5	· 진로변경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
마) 가속코스	10	· 가속구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넘지 못한 경우
바) 신호교차로	5	· 교차로에서 20초 이상 이유 없이 정차한 경우
사) 직각주차	10	· 차의 바퀴가 검지선을 접촉한 경우 ·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· 지정시간(120초) 초과 시(이후 120초 초과시마다 10점 추가 감점)
아) 방향지시등 작동	5	· 출발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· 종료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
자) 시동상태 유지	5	· 가)부터 아)까지 및 차)의 시험항목 수행 중 엔진 시동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때마다 · 엔진이 4천RPM 이상으로 회전할 때마다 ·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경우 가속페달 과조작으로 안전제동장치가 작동할 때마다
차) 전체 지정시간 (지정속도 유지)	3	· 가)부터 자)까지의 시험항목 수행 중 별표 23 제1호의2 비고 제6호다목1)에 따

준수	라 산정한 지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5초마다 · 가속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지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할 때마다
----	---

나. 합격기준

- 1)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은 경우 합격으로 한다.
- 2) 1)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.
 - 가) 시험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
 - 나)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가 하나라도 연석에 접촉한 경우
 - 다)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, 과로 또는 마약·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
 - 라)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경우
 - 마)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거나, 직각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거나,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는 등 각 시험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
 - 바)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경우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경우
 - 사)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거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

3.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

가. 채점기준

시 험 항 목	감 점 기 준	감 점 방 법
(1) 굴절코스 전진	10	○ 감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
(2) 곡선코스 전진	10	○ 감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
(3) 좁은길코스 통과	10	○ 감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
(4) 연속진로전환코스 통과	10	○ 감지선을 접촉한 때마다,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또는 교통콘을 접촉한 때마다

(주)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에는 (1)과 (2)의 시험항목만을 실시한다.

나. 합격기준

-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은 때,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.
- (1)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
 - (2)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
 - (3)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

(4) 시험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제32조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

4. 특수면허

가. 채점기준

시험항목		감점 기준	감점방법
대형 견인 차 면허	(1) 피견인차 연결	10	○ 연결방법이 미숙하거나, 연결시간 5분 초과 시마다
	(2) 방향전환코스 견인 통과	20	○ 확인선을 미접촉하거나, 지정시간 5분 초과 시마다 또는
	(3) 피견인차 분리	10	검지선 접촉 시마다 ○ 분리방법이 미숙하거나 분리시간 5분 초과 시마다
소형 견인 차 면허	(1) 굴절코스 견인 통과	10	○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
	(2) 곡선코스 견인 통과	10	○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
	(3) 방향전환코스 견인 통과	10	○ 확인선을 미접촉하거나,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
구난 차 면허	(1) 피견인차 연결	10	○ 연결방법이 미숙하거나 또는 연결시간 5분 초과 시마다
	(2) 굴절코스 견인 통과	10	○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
	(3) 곡선코스 견인 통과	10	○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
	(4) 피견인차 분리	10	○ 분리방법이 미숙하거나 분리시간 5분 초과 시마다
	(5) 방향전환코스 견인 통과	10	○ 확인선을 미접촉하거나,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

나. 합격기준

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만점에 90점이상을 얻은 때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.

- (1) 특별한 사유없이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
- (2) 시험과제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
- (3)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
- (4) 시험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